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570 호 2026. 7. 16.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53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(26-47)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54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(26-8~12)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55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(26-48)].....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56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(26-49)]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57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]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-158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사항 고시]..... 6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24호[무룡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의 경계확정 및 정정 공고]·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41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변경 공고 (허가26-34)].....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44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(허가26-41)].....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45호[「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 1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48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 (허가26-42)]..... 1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49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 (허가26-43)]..... 1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50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 (허가26-44)]..... 2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-957호[도로점용(굴착)허가 공고 (허가26-45)]..... 21

안
내

-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
회
람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153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효문동 주민자치회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82-2번지	하 천 명 칭	○ 동천
점 용 내 용	○ 공연	점 용 면 적	○ 840.86㎡
점 용 기 간	○ 2026. 7. 23.(목) 16:00 ~ 18:00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15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**변경**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- ☐ 고 시 명 :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
- ☐ 고시기간 : 2026.07.16. ~ 2026.07.30.(14일간)
- ☐ 고시대상 : 총 5건
- ☐ 변경허가 사항

피허가자		허가번호	허가일자	사용목적	점용장소	점용면적	변경사항		변경사유
성명	주소						당초	변경	
김○○	북구 제내 2길 ****	제2026-8호 (변경허가)	2026.7.16.	안공구조물 설치	신현동 958-38	36㎡	2021.12.01 ~ 2026.5.31	2026.06.01 ~ 2031.5.31	기간 연장
김○○	북구 울주군 범서읍 ****	제2026-9호 (변경허가)	2026.7.16.	토지의 점용	대안동 1036	538㎡	2022.04.18 ~ 2026.5.31	2026.06.01 ~ 2031.5.31	기간 연장
(주)롯데○○	북구 산하동 산 ***-**	제2026-10호 (변경허가)	2026.7.16.	토지의 점용	정자동 392-1	15㎡	2022.09.20 ~ 2026.3.31	2026.04.01 ~ 2027.5.31	기간 연장
한국전력**	북구 명촌 23길 *	제2026-11호 (변경허가)	2026.7.16.	안공구조물 설치	달천동 892-25	0.196㎡	2021.10.20 ~ 2026.5.31	2026.06.01 ~ 2031.5.31	기간 연장
한국전력**	북구 명촌 23길 *	제2026-12호 (변경허가)	2026.7.16.	안공구조물 설치	상안동 1215-23	0.599㎡	2022.07.31 ~ 2026.5.31	2026.06.01 ~ 2031.5.31	기간 연장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155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김영*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**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-118번지	하 천 명 칭	○ 매곡천
점 용 내 용	○ 공연	점 용 면 적	○ 33.0m ²
점 용 기 간	○ 2026. 9. 13.(일), 10. 17.(토) 16:00 ~ 19:00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156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이웃사랑운동본부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65		
점 용 위 치	○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-118번지	하 천 명 칭	○ 매곡천
점 용 내 용	○ 공연	점 용 면 적	○ 33.0m ²
점 용 기 간	○ 2026. 7. 25.(토) 15:00 ~ 19:00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157호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일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매곡동 898-6	당수골2길 11	2026. 7. 15.	2026. 7. 16.	2017. 5. 4.	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
송정동 1154-11	송정5길 8	2026. 7. 15.	2026. 7. 16.	2018. 5. 10.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584)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- 158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협의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협의 번호	협의자		점용장소	면적 (㎡)	협의기간	점용목적
	성 명	주 소				
제2026 -4호	울산광역시 북구청 (강동동행정 복지센터)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17-5번지 일원	400	'26. 07. 15. ~ '26. 09. 15.	2026년 여름철 해변 갈끔이 프로젝트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24호

무룡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의 경계확정 및 정정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무룡1지적재조사지구 내 경계미확정 토지 6필지 중 5필지[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-1645호(2025. 12. 2.)]에 대하여 경계확정으로 정정, 1필지는 경계확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명 : 무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
2. 사업시행자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3. 필지수 및 면적 : 6필지, 4,229.9m²
 - 정정(경계미확정→경계확정) : 5필지, 3,244.2m² / 경계확정 : 1필지, 985.7m²
4. 지적확정조서 : 붙임참조
5. 공람기간 : 2026. 7. 9. ~ 2026. 7. 24.
6. 공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
7. 공람 비치서류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8. 문의처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(052-241-7282)

지 적 확 정 조 서

사업지구명 : 「무룡1지구」 지적재조사사업

번호	종전 토지				확정 토지				면적증감		소유자		비고
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증가(㎡)	감소(㎡)	성명	주소	
1	무룡동	607-5	대	1,104	무룡동	607-5	대	1,104.0	0.0	0.0	이*립	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*	정정[경계미확정→경계확정]
2	무룡동	607-7	임야	379	무룡동	607-7	임야	361.2	0.0	17.8	이*립	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*	정정[경계미확정→경계확정]
3	무룡동	608-1	대	319	무룡동	608-1	대	319.0	0.0	0.0	이*립	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*	정정[경계미확정→경계확정]
4	무룡동	608-5	전	832	무룡동	608-5	전	832.0	0.0	0.0	이*립	울산광역시 중구 운곡안길 *	정정[경계미확정→경계확정]
5	무룡동	764	대	1,005	무룡동	764	대	985.7	0.0	19.3	김*규	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***	경계 확정
6	무룡동	산94-2	임야	628	무룡동	765-2	임야	628.0	0.0	0.0	박*성(외 1명)	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4길 * ***동 ***호	정정[경계미확정→경계확정]
합계		6필지		4,267		6필지		4,229.9	-	37.1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41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(변경)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삼호개발(주)		
주소	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		
점용 위치	○ 상안동 532-2 ○ 상안동 1217-24	노선명	○ 소2-611 (상안새터길)
점용 목적	○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	점용 면적	○ L = 6.5m ○ A(일시) = 16.8㎡ ○ A(계속) = 3.2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44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		
점용 위치	○ 송정동 1240-7 (곡리5길 9) ○ 송정동 1242-5 (곡리8길 55) ○ 송정동 1161-9 (송정8길 4) ○ 화봉동 1504-5 (화산5길 31)	노선명	○ 소2-450 ○ 소2-408 ○ 소1-130
점용 목적	○ 도시가스 인입공사	점용 면적	○ L = 12.0m ○ A(일시) = 21.6㎡ ○ A(계속) = 0.66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45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 (안 제24조)
- 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조항 신설 (안 제25조)

3. 근거법규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세무1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라. 제 출 처

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, 북구청 세무1과

2) 전화번호 : 052)241-7503, 팩스번호 : 052)241-7509

3) 전자우편(E-mail) : ish76727@korea.kr

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의견제출서

조 례 명	「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구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·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
2. 구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 초청
3. 구 시책 홍보·고향사랑기금 사업 자료 등 발송
4. 연하장·감사 편지 발송
5.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)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·행사·이벤트 등 추진
2.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, 경품(상품권 포함), 시상금(상품권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4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구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·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. 구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 초청 3. 구 시책 홍보·고향사랑기금 사업 자료 등 발송 4. 연하장·감사 편지 발송 5.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u><신 설></u>	제25조(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)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1.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·행사·이벤트 등 추진 2.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, 경품(상품권 포함), 시상금(상품권 포함)을 지급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원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, 주기적인 조사·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·접수 및

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

1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5
2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3
3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2
4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: 100분의 10

-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”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48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		
점용 위치	○ 달천동 1045-1 (모바일테크밸리 오피스텔)	노선명	○ 대2-76
점용 목적	○ 도시가스 인입공사	점용 면적	○ L = 404.0m ○ A(일시) = 726.8㎡ ○ A(계속) = 88.88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15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49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		
점용 위치	○ 매곡동 933-5	노선명	○ 중1-312
점용 목적	○ 도시가스 인입공사	점용 면적	○ L = 15.0m ○ A(일시) = 27.0m ² ○ A(계속) = 0.9m ²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50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박성수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		
점용 위치	○ 염포동 201 ○ 염포동 208-7	노선명	○ 대2-1
점용 목적	○ 도시가스관 시험터파기	점용 면적	○ L = 6.0m ○ A(일시) = 10.8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3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- 957호

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울산광역시산림조합 대표 김영춘		
주소	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17(무거동)		
점용 위치	○ 호계동 822-10 ○ 호계동 822-5 ○ 호계동 800-1 ○ 호계동 800-2	노선명	○ 광3-3 (산업로)
점용 목적	○ 하수관로 매설공사	점용 면적	○ L = 10.0m ○ A(일시) = 16.6㎡ ○ A(영구) = 4.0㎡
점용 기간	○ 일시 : 착공일로부터 90일간 ○ 계속 : 준공일로부터 10년간		